(재)충청북도기업진흥원 공고 제2025-49호

## 2025년 가족친화인증기업 바우처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

<u>가족친화인증기업</u>에 대한 다양한 지원으로 직원의 일·생활 균형 및 가족친화 직장문화 확산을 위해 「2025년 가족친화인증기업 바우처 지원사업」 참여기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> 2025년 3월 11일 (재)충청북도기업진홍원장

1. 사업개요
□ <b>사업목적</b> ○ 일·생활 균형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가족친화인증기업 <sup>*</sup> 에 대한 지원 강화로
정년 인구 유입 및 출산율 제고 도모 *일·생활 균형(워라벨)을 위한 조직문화 혁신 + 자녀 출산 및 양육지원제도 운영기업
□ 모집규모 : 15개사 내외 <u>(자부담 총 사업비10% 이상, VAT제외</u> )
□ 사업기간 : 선정일 ~ 2025. 11. 30.
□ 지원대상 : 충청북도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둔 가족친화인증 중소기업*(여성가족부 인증) *인증서 발급이 완료된 기업에 한함(가족친화인증기업 확인 : 가족친화지원사업 www.ffsb.kr) ※ 24년도 기수혜기업 재신청 1년 유예(신청 제한)
□ 지원내용
<ul> <li>○ 총 지원한도(기업당 최대 15,000천원) 내 바우처 형식의 수요자 맞춤형(패키지) 지원</li> <li>- 바우처 사업 : 사업화 5종, 마케팅 3종, 사업기획 2종, 시설 현대화 1종 중지원분야별 한도(바우처 사업내역 참조) 내에서 자율편성하여 사업계획서 제출</li> </ul>
□ 평가기준 및 업체선정 ○ 평가기준 : 평가기준표(별첨)에 의한 평가 - 정량평가(50) : 지역경제 기여도 및 기업 건식도 *내부평가

(2순위) 정성평가 항목 내 지원사업 필요성 분야 고득점 순

- 정성평가(50) : 사업 필요성 및 역량 \*외부평가(외부전문가 평가위원회 운영)

O 업체선정: 고득점 순 선정(내·외부 평가점수 합산)

\*동점자 처리기준 : (1순위) 가족친화인증 유지기간이 오래된 순

## 2. 바우처 사업내역(지원내용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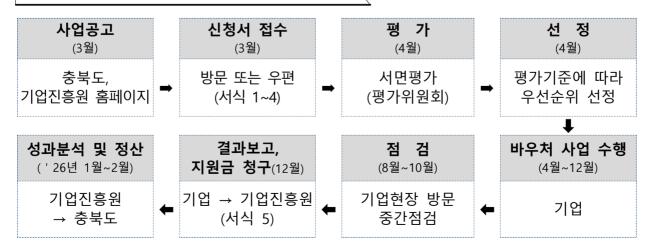
O 지원한도 내 바우처 형식의 수요자 맞춤형(패키지) 지원

(단위	처	워'
\ I ' I I	 	1.7

지원분야	세부 프로그램	주요 내용		
사업화	시제품 제작	시제품 설계·제작 지원		
	제품·포장 개발	제품·포장 디자인 개발		
	국내외 인증	인증 규격인증 및 국제표준 경영시스템인증 획득에 필요한 컨설팅, 시험·분석		
	특허 및 지재권	특허, 브랜드 등 출원 및 침해 대응		
	기술 컨설팅	보유기술 경제성 로드맵, 기술경영 컨설팅 등		
마케팅	온오프라인 마케팅	유튜브, TV 홈쇼핑 등 활용 마케팅		
	국내외전시회 참가	국내·외 박람회 직접 참가 시 부스비 지원		
	기업·제품 홍보	CI 및 홈페이지 리뉴얼, 제품·회사 카달로그 제작		
사업기획	공모사업 기획 컨설팅	중앙부처 공모사업 기획, 사업계획서 작성 등 신청 지원	F 000	
	경영전략 수립 컨설팅	기업 중장기 성장전략 수립 컨설팅	5,000	
시설 현대화	제조시설 설치	제품 가공·선별시설, 포장 기계 등 설치	15,000	

<sup>\*</sup>총 지원한도(기업당 15.000천원) 내에서 자율편성하여 사업계획서 작성·제출

## 3. 추진일정



<sup>\*</sup>신청금액 제외 대상 : 부가가치세, 지원한도 초과분 제외

#### 4. 신청방법

○ 신청기간 : 3.11(화) ~ 3. 25(화) 18:00까지

O 신청방법 : 방문 또는 우편제출 ※우편제출은 18:00 도착분에 한함

○ **접 수 처** : 충청북도기업진흥원(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2층 기업지원부)

○ 제출서류 〈 아래 순번대로 취합제출 〉

순번	제출서류		
1	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5부(원본 1부, 사본 4부) (서식1)		
2	정보활용 동의서(서식2), 개인정보 수집,이용,제3자 제공 동의서(서식3), 의무이행 동의서(서식4)		
3	국세,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		
4	사업자등록증명원, 법인등기부등본( <b>법인</b> ), 공장등록증, 가족친화기업 인증서( <b>최초, 재인증 전부 포함</b> ) 각 1부		
5	결산 재무제표( <b>최근 2년</b> (22 '~23 ')),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( <b>최근 3개월</b> ) 각 1부		
6	유망중소기업 인정 및 품질인증서( <b>기업부설연구소, 이노비즈, 메인비즈, 벤처기업, 녹색인증기업, ISO인증</b> )		
7	프로그램 지원금 산출 내역 근거자료( <b>세부 견적서, 계약서 등</b> )		
8	가점증빙서류(여성기업확인서, 장애인기업확인서, 소기업 확인서) ※ 해당시 제출		

<sup>\*</sup> 상기 제출서류 외, 평가를 위해 추가자료 요청 가능

### 5. 사업계획 변경 및 결과보고

- **사업계획 변경**: 사업수행 중 프로그램 내용 및 공급기관 변경이 불가피하여 계획서 수정이 필요할 경우 진흥원과 사전협의 후 변경신청 가능 <**서식 별도 안내>**
- 결과보고 : 소정양식 작성 후 담당자에게 제출(제출일 별도 안내)
  - 제출서식(서식5) : 결과보고 및 지급신청서(원본 1부)

## 6. 유의사항

- □ 시설현대화 지원분야 선정기업 의무사항
  -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(재산 처분의 제한) 및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23조(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)에 의거, 해당 지원사업으로 취득한 자산은 5년간 관리 대상으로 아래사항 준수 필수
    - 목적 외 용도 사용, 양도, 교환(대여), 담보의 제공 등 금지
    - 상기 사항 미 준수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 환수 가능 \*5년간 사후관리(매년 1~2회 취득한 자산의 사용실태 현장점검 등) 적극 이행
  -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사업수행중 또는 사업완료(자산 취득 등) 이후에도 충북지역 외 타 시·도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타지역 소재로 확인될 경우 자금지원 중단, 회수 등의 조치를 받으실 수 있음

#### □ 사업 선정기업 의무사항

- O 사업에 최종 선정된 기업은 본 사업의 성과제고를 위해 사업의 진행상황 점검에 필요한 사업 수행기관(진흥원)의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.
  - 사업 진행상황 점검을 위해 요구하는 필요서류 제출, 정기적인 모니터링 (서면조사, 현장점검 등), 기타 현황보고 등
- O 사업추진 중 당초 신청·결정사항과 다르게 사업내용, 공급기관 변경이 필요할 경우, 반드시 사업 수행기관(진흥원)과 사전협의·승인 등의 절차를 통해 추진할 수 있습니다. \*임의변경 및 추진 시 지원금 지원 제한
- 지원결정사항(업체명, 대표자, 소재지, 휴.폐업, 법인합병,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등) 변경이 발생될 경우, 즉시 사업 수행기관(진흥원)에 신고하여야 하며, 휴·폐업, 법인 합병, 개인기업의 법인전환(포괄양도양수 등) 등의 경우에는 지원 중단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\*신고방법, 제출서류 등 별도 안내

#### □ 지원금 지급

- O 지급방법 : 결과보고서 및 사업비 지급 신청서(집행내역 포함) 징구 후 지급
  - 당초 사업계획 및 지원결정 사항 대비 100% 이행시 지급
  - 최종 사업비 집행내역(입금증, 세금계산서 등 증빙 포함) 필수 제출

### □ 기타사항

- 사업 신청 후 서류 보완(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, 평일기준)이 되지 않거나, 신청서 (첨부서류 포함) 내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(평가 제외 등)을 받으실 수 있으며,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
- O 신청서 접수결과 적격업체가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예비합격제 운영: 사업에 최종 선정된 기업의 중도 포기 또는 결격사유 등 발생 시 또는 <u>추후 사업추가 확대 시 별도의 재공고(모집) 절차 없이 예비</u> 합격자 중에서 차순위자를 선정·지원할 수 있습니다.
- 사업신청 제한 : 신청일 현재 휴·폐업 중인 기업, 국세·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, 기타 본 사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

### □ 사업문의 : 충청북도기업진흥원 기업지원부

○ 담당자 : 유수형 대리(043-230-9752)

# 별첨

# 평가기준

=	구분	지표명	배점	평가내용
총점		100		
		가족친화인증 유지기간	10	재인증(3회 이상) 10점, 기간연장(2회) 8점, 신규인증(1회) 6점
	지역	유망중소기업 및 품질인증취득	10	기업부설연구소, 이노비즈, 메인비즈, 벤처기업, 녹색인증기업, ISO관련 인증(최대 2개) ※ 인증당 3점, 최대 10점
정량	경제 기여도 및	고용인원 (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기준)	5	30인 이상 5점, 10인 이상 4점, 10인 미만 3점
명   가 	ಏㅣㄱᇇ	매출액 증가율	10	15% 이상 10점, 10% 이상 8점, 10% 미만 6점
		자기자본비율 (직전년도)	10	50% 이상 10점, 30% 이상 8점, 30% 미만 6점 (*자본총계 ÷ 자산총계)
		산업재산권 보유 (특허, 실용신안권)	5	1건 등록 3점, 2건 등록 4점, 3건 이상 등록 5점
H	명   ᆛᆽ	지원사업 필요성	20	지원사업(바우처) 신청배경 및 필요성
시 성 평 가		사업비 적정성 및 사업 효과성	15	사업비의 적정성 및 사업의 효과성
1		사업수행 역량 및 사후관리 적정성	15	신청사 사업수행역량, 사업종료 후 활용방안, 관리체계의 적절성
기 타	가점	가점사항	5	여성기업, 장애인 기업, 소기업 ※ 해당 시 최대 5점

※ 신청제한 : 24년도 지원기업(재신청 유예기간 1년 적용)